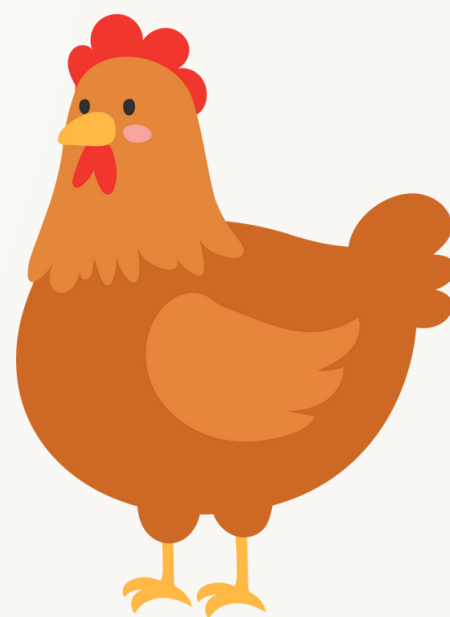




“9월부터 4번 계란이 점차 사라진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적용 농식품부 대책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

서부사료(주)

요약

‘25. 9. 1부터 신규로 농장에 반입하여
육성장 또는 케이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0.075m²/수 적용



기존 7.5만수 면적에서
5만수 사육 허용



+3% 이내 초과 밀도는 허용
(5만수 기준 51,500수)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부사료(주)

적용 및 예시

‘25. 9. 1 이후 입식 시 신규기준 적용

(국내서 기존 4번 계란 기준인 $0.05\text{m}^2/\text{수}$ 기준 사육 불가)



9.1 전후 $0.05\text{m}^2/\text{수}$ 허용 예시

-**허용**: 8.31 이전 입식, 9.1 이후 케이지 이동

-**위반**: 8.31 이전 외부 위탁, 9.1 이후 농장 반입

농장 내 이동

농장 외부 → 농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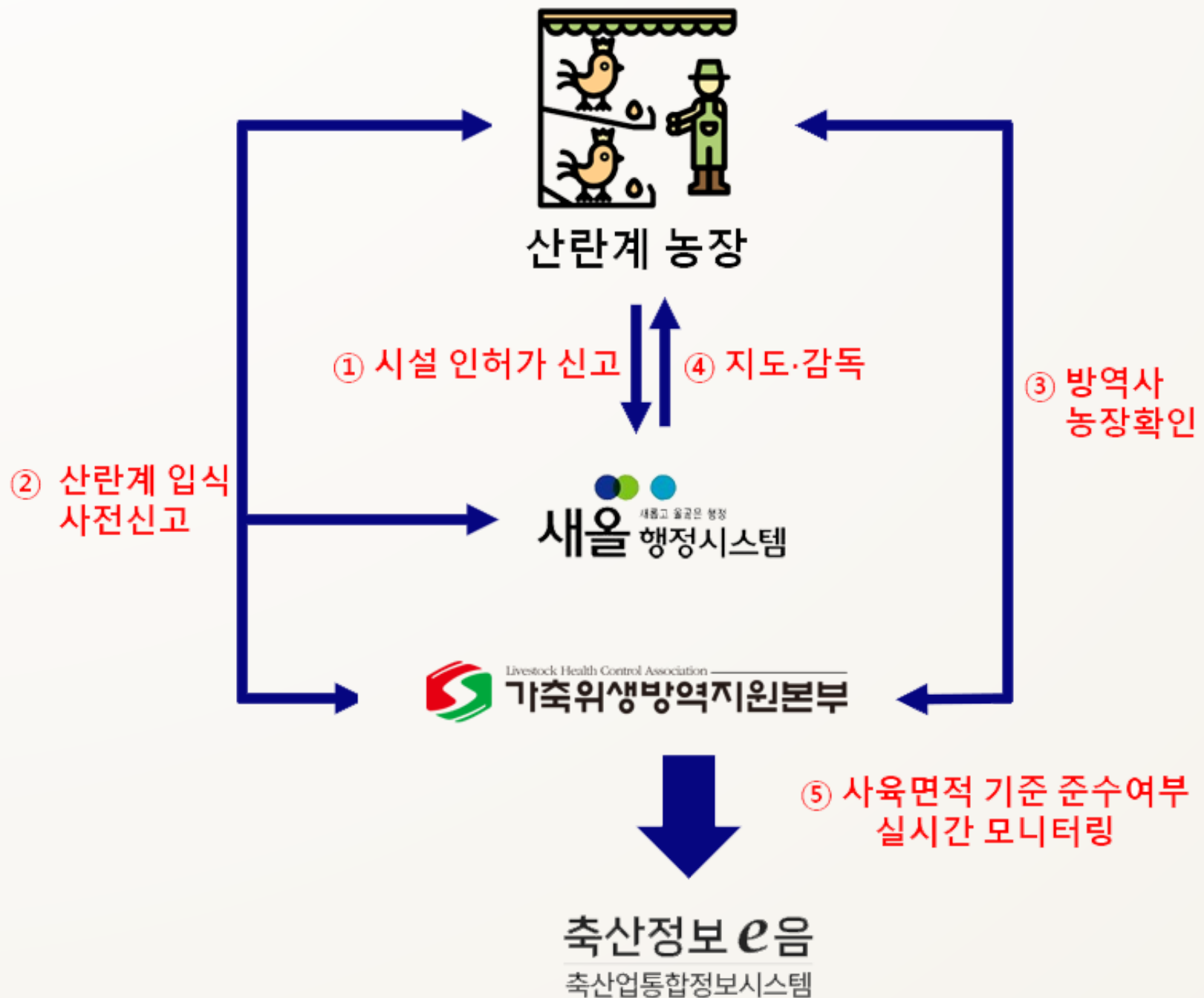


사육밀도 초과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

서부사료(주)

시스템 운영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부사료(주)

과태료 및 처분

사육밀도 위반 횟수 별 과태료 기준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진행



사전 입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농장 내 3번($0.05\text{m}^2/\text{수}$), 4번($0.075\text{m}^2/\text{수}$)
환경이 혼재된 경우 과태료 처분 유예



농장 내 3, 4번 환경 구분이 어려울 경우
해당농장은 난각에 4번으로 표시해야 함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부사료(주)

종합

9.1 이전 농장 내 반입을 마친 산란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유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육수 축소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일 이전 입식을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란계 케이지 단수는 3월 이후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 농가 중심으로

노후형 케이지(A형)의

무창계사 직립형 케이지 교체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지역의 서부사료 Farm Consultant에게

연락주세요.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부사료(주)